

별첨1

KCI 논문 철회 조치사항 상세 안내자료

KCI 우수등재, 등재(후보)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,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■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(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)

① 학술지(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)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, 일정 사유로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, 2016.10.18., 2017.04.06., 2022.04.14.)

1.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

보완 설명

KCI(www.kci.go.kr) 외 타 웹사이트에서 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, 해당 논문 페이지에 **철회 사실 및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**하고 재단에 증빙자료(캡처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.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(최소 3년 이상)

보완 설명

철회 요청 **공문 및 회의록** 등에 논문투고 금지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.

3.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

보완 설명

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음을 **학술지 발행기관 또는 학술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판정 직후 발행되는 학술지 권·호에 철회 사실 및 사유, 조치사항** 등을 공지하고 재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(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)을 통보

보완 설명

연구부정행위 논문의 **철회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**(윤리위원회, 편집위원회 회의록 등)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각 항에 따른 조치사항 증빙을 **공문으로 재단에 통보**하여야 합니다.

※ 공문에 포함 할 사항: 학술지명, 발행연월(권호정보), 논문제목, 저자, 철회사유, 조치사항

5.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

보완 설명
철회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일 경우,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 논문 철회 사실 및 사유,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고, 통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철회 요청 공문에 “연구비 지원 사실이 없음” 을 명시)

6.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

보완 설명
해당 논문의 철회 사실 및 사유, 조치사항을 논문 저자(교신저자 및 공저자 포함)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, 통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삭제 (2016.10.18.)

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,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단, 특별한 사유(법적 분쟁 등)가 있는 경우 재단의 인정을 거쳐 관련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.(개정 2016.10.18., 2020.03.30., 2024.05.14.)

처리내용	비고
- 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	※ 차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신규평가에 신청할 수 있음

■ KCI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확약서

- 철회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, 철회 논문의 모든 저자로부터 동의서 및 확약서 접수([별첨2] 양식 참조)